

## 세입 사업별 사업설명자료

토지대여료
11-51-511

###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토지대여료	1	2	2	2	2	0	0

### 1.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5조(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 수입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 2. 세입 개요

-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타인(법인포함)에게 임대계약 후 받는 대여료
  - 광주·전남지방병무청(22m<sup>2</sup>) 청사부지 일부 임대에 따른 수입

###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1	1	1	1

건물대여료
11-51-512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건물대여료	95	93	93	93	93	0	0

1.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5조(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 수입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2. 세입 개요

- 국유재산인 건물에 대하여 타인(법인포함)에게 임대계약 후 받는 대여료
  - 서울청·충북청 구내식당, 지방병무(지)청 병역관정검사장 나라사랑카드발급소 등 건물임대에 따른 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93	91	95	96

기타관유물대여료
11-51-513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기타 관유물대여료	12	15	15	15	15	0	0

1.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5조(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 수입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2. 세입 개요

- 국유재산인 관유물을 타인(법인포함)에게 임대계약 후 받는 대여료
  - 서울청 구내식당 식탁 및 의자 대여에 따른 수입
  - 주거용 임차숙소 사용료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12	10	12	14

<b>과태료</b>
12-56-563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과태료	8	10	10	10	10	0	0

1. 법적 근거

- 구 병역법 제95조(법률제7186호 : '04.3.11 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제1항 및 제2항
  - 제94조의 죄(미귀국)를 범한 사람의 귀국보증인은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 병역법 부칙 제3항(법률 제7430호 : '05.3.31)
  -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0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국외여행허가기간 또는 기간연장허가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귀국보증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입 개요

- 국외여행 미귀국자의 귀국보증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 ☞ 2005. 7. 1부 과태료부과 제도 폐지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5	4	8	5

<b>변상금</b>
12-57-57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변상금	-	-	-	1,310	1,310	1,310	-

**1. 법적 근거**

- 감사원법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 등) 제1항
  -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의 유무를 심리하고 판정한다.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감사원의 판정 전의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제1항, 제3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계관계직원이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이 판정하기 전이라도 해당 회계관계 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할 수 있다.
    - 1. 중앙관서의 장(이하생략)
  -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받은 회계관계직원은 이의가 있으면 감사원이 정하는 판정청구서에 의하여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납입고지서의 송달)
  - 제4조에 따른 변상명령서는 「국고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납입고지서와 함께 변상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세입 개요**

- 서울지방병무청 사회복지교육센터 임차계약('08년~'13년) 부당처리 관련 변상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	-	-	-

위약금
12-57-572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위약금	9	11	11	11	11	0	0

1.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5조(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 수입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지체상금)제1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2. 세입 개요

- 물품 및 용역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	37	9	-

기타경상이전수입
12-59-596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기타 경상이전수입	126	75	75	75	75	0	0

1.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5조(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 수입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 국고금관리법 제29조(지출금의 반납) 제2항
  -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2. 세입 개요

- 우편요금결제 전용카드 적립금, 의무자여비 환수, 국고통장 이자 수입 등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42	57	126	81

기타잡수입
13-69-69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기타잡수입	2	3	3	3	3	0	0

1.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5조(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 수입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기록물의 폐기)제1항
  -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세입 개요

- 국유재산 또는 정부물품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은 물건의 폐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등
  - 폐기문서 및 고철 매각대금 등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3	2	2	1

기타고정자산매각대
15-71-713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기타 고정자산매각대	6	7	7	7	7	0	0

1.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5조(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 수입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 물품관리법 제35조(불용의 결정 등)제1항
  -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물품관리법 제36조(매각)제1항
  -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

2. 세입 개요

- 국유재산, 정부물품으로 편성되어 있는 물건 중 노후, 고장 등 용도폐기 되어 불용 또는 폐품 처리 시 발생하는 수입금
  - 의료장비, 사무용가구 등 매각대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6	11	6	28